승인번호 제 118002 호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기준 2026년 10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기관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	시·군·구
※	※	※	※	※

※ 이 항목은 고용노동부(청, 지청)에서 기입합니다.

➜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에서 승인받은 지정통계(제 118002호)로서 동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 조사는 기관의 고용변동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자 수, 입.이직자 수 등에 대해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용

1. 기관 현황

기관명칭		소 재 지		설 립 연 월	년 월

2. 근무자 수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 외국인포함,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제외

구 분		근무자 수		노 동 이 동							빈 일자리
		'26.9월 근무자 수	'26.10월 근무자 수	'26.10월 입직자 수			'26.10월 이직자 수				빈 일자리 수
				총 계	채 용	기 타	총 계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기 타	
		'26.9월 마지막 근무일 시점에 일한 근무자 수	'26.10월 마지막 근무일 시점에 일하고 있는 근무자 수	'26.10월 초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들어온(입직한) 근무자 수 (신규채용, 전입, 복직 등)	채용한 근무자 수	- 전입: 본부와 지사, 지사와 지사 간의 인사이동 등 (내부의 부서 이동은 제외) - 복직 등	'26.10월 초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나간(이직한) 근무자 수 (자발·비자발적 이직, 기타 등)	자발적 퇴직자 수 (정년퇴직자는 기타로 분류)	- 고용계약종료 (단기, 계절적 계약 모두 포함) -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 기관운영상 휴직 등	- 전출: 본부와 지사, 지사와 지사간의 인사이동 등 (내부의 부서 이동은 제외) - 정년퇴직 및 사망 - 병가·육아휴직 등	'26.10월 마지막 근무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전 체	총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무원	총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비공무원	총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상 용	총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임시·일용 (공공근로 등 직·간접 일자리 모두 포함)	총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기 타	총 계	명	명	비 고							
	여 자	명	명								

확인란	응 답 자						책임자 확인
	성 명		근무부서		직 책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조사담당자	조사관리자
※	※ (인)

방문 (통화) 기록지	회차	방문(통화)일시	방문(통화) 내역
	1차	※	※
	2차	※	※
	3차	※	※

※ 조사표 작성요령은 조사표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자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무자	• 마지막 근무일 시점에 일하고 있는 근무자
공무원 및 비공무원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비공무원** 공무원을 제외한 자
상 용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임시·일용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미만인 자 ☞ 공공근로 등 직·간접 일자리 모두 포함
기 타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또는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그 외 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입·이직자	• 조사기준월(월력상) 초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입·이직한 근무자 ☞ 해외 파견자 파견 및 복귀시 입·이직 기타로 처리
빈 일자리	• 조사기준월(월력상) 마지막 근무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 '구인활동'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과정(신문·방송 광고, 구두 홍보, 지원 서류 접수, 면접 등 최종적으로 채용 확정 공지일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

【주의】 •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는 당월 근무자에 포함하고 다음 달의 이직자로 처리

▌예시1 (입직자 수)

⇨ **A기관의 B지사에서**

① 10월 2일에 2명을 채용 → 신규채용자: 2명

② 10월 23일에 1명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 → 기타(복직자): 1명

③ A기관의 C지사 2명이 10월 1일자로 발령 받음 → 기타(전입자): 2명

⇒ 입직자 수는 5명 = (①신규채용 2명) + (②+③기타 3명)

▌예시2 (이직자 수)

⇨ **A기관의 B지사에서**

① 10월 1일에 2명을 A기관의 C지사로 발령 → 기타(전출자): 2명

② 10월 20일에 5명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 → 비자발(계약종료자): 5명

③ 10월 27일에 2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 → 자발(퇴직자): 2명

④ 10월 27일에 1명이 정년퇴직한 경우 → 기타(정년퇴직자): 1명

⇒ 이직자 수는 10명
= (③자발적 이직 2명)+(②비자발적 이직 5명)+(①+④ 기타 3명)

▌예시3 (빈 일자리)

⇨ **A기관의 B지사에서 10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근무일 현재,**

① 구인활동(채용공고 등) 중이고, '26.11월 중 일이 시작되는 경우
→ 빈 일자리는 10개

② 구인활동(채용공고 등) 중이고, '26.12월 중 일이 시작되는 경우
→ 빈 일자리는 0개

③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경우 → 빈 일자리는 0개